

「수출용 목재포장재 열처리 인증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



(사)한국파렛트협회
전무이사 박 은 규

1. 대 중국 수출 목재포장재 검역현황

중국이 지난 2월부터 한국산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열처리후 식물위생증명을 첨부하도록 하여 (2002.02.23) 수출업계 및 파렛트업계에 큰 충격과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국립식물검역소와 (사)한국파렛트협회가 추진하여 제정한(2002.1.19) 수출용 목재포장재 열처리규정에 따라 그동안 158개 업체가 열처리 인증업체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중국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상해 검역국의 통계에 따르면 6개월동안 한국산 목재포장재에 대해 실시한 4,000여건 중 포장증명과 실제포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228건, 해충이 발생한 포장재가 38건으로 조사됐다고 상하이저널이 보도했다.

이중 해충이 발생한 38건중 열처리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24건이 발견돼, 전체해충발생 포장재의 63%로 높게 나타났으며 열처리 증명이 없는 경우가 14건이었다.

2. 열처리규정 및 검역의 문제점과 대책

현행 열처리규정은 농림부 식물검역소가 열처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인증을 내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에 158개 업체가 인증을 획득했다.

한달평균 26~27개사가 인증을 받은 꼴이며 거의 매일 1~2개 업체가 인증을 받은 결과로 급격히 조성되었든 것이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목재포장재 업계에서는 인증업체수가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로인해 목재포장재 열처리 품질에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여 왔으며, 이번 중국측의 검역결과는 미리 예견되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검사결과는 앞으로 우리나라 검역체계의 국제적 신인도에 직결되어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금년내에 미국등 다른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식물위생증명을 첨부하도록하는 규제가 확대될 경우 무역업계 특히 수출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것이란 견해도 있다.

식물검역소에서는 『 매 분기마다 인증업체 실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 2분기 검사를 마쳤다고 밝히고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일부 목재포장재 업체가 실사 시기에는 제대로 열처리를 하다가 실사가 없을때는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식물검역소는 문제가 발생한 목재포장재 업체의 경우 문제점이 시정될 때까지 중국으로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목재포장재의 경우 모두 검역을 거쳐 위생증명을 발급 받아 수출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중국측의 검사결과는 국내검역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열처리규정과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열처리시설 인증기준 측면

목재중심부 온도 56°C 30분 이상 처리는 목재 건조에 있어 병충해가 소멸되는 필요 온도이지만 이는 목재 중심부 습도 20%가 병행되어야 가능하다. 목재 중심부 삽입 온도검침의 구멍이 넓거나 정확히 목재중심부까지 열이 도달하지 않은 상태의 56°C 30분은 목재 중심부 습도 20%가 되어 자연히 도달되어야 하는 원리를 무시하고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검침 시간과 경비를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침투상의 위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단순히 PC에 나타나는 시간과 온도만을 맞춘다면 당연히 병해충이 소멸되지 않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검침의 목재중심 삽입의 정확성과 습도 20% 체크가 병행되어야 할것이다.

② 열처리시설 관리상의 문제점

열처리시설을 매 분기마다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158개 업체의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는지가 문제이며(검사인원, 시간) 식물검역소 측의 말대로 검사시만 정확하게 하고 평소 위에서 지적한대로 편법 운영한다면 매 분기 검사는 계속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매 분기마다 실시하되 미국이나 캐나다의 예와같이 우리나라도 관계 민간 전문기구에 일정한 부분을 위임 관리도록(예:미국, 캐나다 패렛트협회가 매 월 검사하도록 위임) 지역별 열처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상호 감시도록 하면서 외국으로부터의 검역에 문제점이 발생한 업소는 철저하게 원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을 규명하여 열처리시설 인증업체를 즉각 취소하고 1년간 재인증업체지정 금지 등 강력한 관리가 요망된다.

지역에서의 편법처리등 부실 열처리 업체는 지역의 경쟁업체가 더 잘알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국이 금년내에 미가공 목재포장재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기 위한 예비검사를 진행중이며 세계각국이 점차 우리나라에 대한 검역규제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현 시점에서 식물검역의 국제신인도 확보를 위하여는 보다 철저한 목재포장재 열처리시설 기준강화 및 관리 운영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본다.

